

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사업계획

1. 가수 홍진영

1. 사업 목적

-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50만 원 × 20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
- 신청자격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*의 대학생
 - *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본인이거나, 미혼자는 부 또는 모, 기혼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인정
 - ※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: 성적(100점)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2. 건설근로자공제회

1. 사업 목적

-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543백만 원(100만 원 × 543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직전년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
 - ※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(21.4.2(금))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(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) 받은 근로자 제외(기부처 확인)
 - ※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,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(기부처 확인)
 - ※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(재단 확인)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543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10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고학년* > 성적상위자 >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>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> 연소자
 - *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
- 제출서류: 퇴직공제 적립내역서*, 가족관계증명서(미제출시 탈락 처리)
 - *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→적립일수 확인하기→나의 정보조회→적립내역서 출력
 - ※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
 - ※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「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-1122」를 통해서 확인 가능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3. 구찌코리아

1. 사업 목적

- 패션계열 학과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2백만 원(150만 원 × 34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 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패션, 의류, 의상, 섬유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
 - 2021년도 1학기 기준 2, 3학년인 재학생
 - ※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
 - ※ 푸른등대 구찌코리아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34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1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4. 대한LPG협회

1. 사업 목적

-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,040백만 원(200만 원 × 260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택시(법인 및 개인) 운전 경력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
 - ※ 푸른등대 기부장학금(대한LPG협회)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
 - ※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260명
 - * 학제(국내4년제/전문대학)의 경우 신청 인원예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, 법인/개인 택시는 1:1의 비율로 선발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다자녀(세자녀 이상)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장자

제출서류

○ 법인택시

- (부모)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

○ 개인택시

- (부모) 사업자등록증명(민원24 발급)

※ 택시기사경력(1년이상)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

※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,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

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5. 말남장학금

1. 사업 목적

-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20백만 원(200만 원 × 1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- 신청자격: 취경여고 졸업생 중 2021년도 1학기 수도권* 소재 대학 입학(예정) 자 * 서울, 경기, 인천
- 성적기준: 없음 * 신입생 선발
- 지원인원: 1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자기소개서*(50점)
 - * 심사위원: 재단 위촉 2인 심사(내부 또는 외부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취경여자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

자기소개서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| |

6. 사무금융우분투재단

1. 사업 목적

-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00만 원 × 5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실일 기준 현재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
 - ① 사무금융분야(제2금융권*)
 -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,
 -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
 - ② ①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
 - * 신청가능 원사업장(금융기관)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(참고1)
 - ※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(해당기관에 확인) (참고2)
 - ※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선발 제외
 - ※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(단,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, 자녀 2명까지 지원)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5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 기준 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*
 - *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 1

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('21년도 1학기 기준)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|-----|
| 건설공제조합 | 011 |
| ABL생명보험 | 012 |
| AIA생명보험 | 013 |
| AXA손해보험 | 014 |
|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| 015 |
| DGB생명보험 | 016 |
| DH저축은행 | 017 |
| HMM | 018 |
| HSBC은행 | 019 |
| IBK신용정보 | 020 |
| IBK연금보험 | 021 |
| IBK저축은행 | 022 |
| IBK캐피탈 | 023 |
| JT저축은행 | 024 |
| JT친애저축은행 | 025 |
| JT캐피탈 | 026 |
| KB국민카드 | 027 |
| KB손해보험 | 028 |
| KB손해사정 | 029 |
| KB신용정보 | 030 |
| KB증권 | 031 |
| KB캐피탈 | 032 |
| KCA손해사정 | 033 |
| KDB생명보험 | 034 |
| KDB캐피탈 | 035 |
| KIS정보통신 | 036 |
| KSNET | 037 |
| MG손해보험 | 038 |
| NH농협중앙회 | 039 |
| NH농협캐피탈 | 040 |
| NH투자증권 | 041 |
| PCA생명보험 | 042 |
| SGI신용정보 | 043 |
| SK매직 | 044 |
| SK증권 | 045 |
| 교보생명보험 | 046 |
| 교보증권 | 047 |
| 금융감독원 | 048 |
| 금융보안원 | 049 |
| 대구은행 | 050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대상정보기술지부 | 051 |
| 대신증권 | 052 |
| 대한건설협회 | 053 |
| 더케이손해보험 | 054 |
| 더케이저축은행 | 055 |
| 동양네트웍스 | 056 |
| 동양생명보험 | 057 |
| 롯데카드 | 058 |
|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| 059 |
|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| 060 |
| 메이슨참존 | 061 |
| 메트라이프생명보험 | 062 |
| 미래신용정보 | 063 |
| 미래에셋생명보험 | 064 |
| 보험개발원 | 065 |
| 보험연수원 | 066 |
| 부산에큐온저축은행 | 067 |
| 비씨카드 | 068 |
| 삼성증권 | 069 |
| 삼일회계법인 | 070 |
| 상상인증권 | 071 |
| 생명보험협회 | 072 |
| 서민금융진흥원 | 073 |
| 서울보증보험 | 074 |
| 서울시태권도협회 | 075 |
| 신용보증재단(경기) | 076 |
| 신용보증재단(경북) | 077 |
| 신용보증재단(서울) | 078 |
| 신용보증재단(서울희망) | 079 |
| 소방산업공제조합 | 080 |
| 소프트웨어공제조합 | 081 |
| 손해보험협회 | 082 |
| 전북신용보증재단 | 083 |
| 신용회복위원회 | 084 |
| 신한금융투자 | 085 |
| 신한생명보험 | 086 |
| 신한아이타스 | 087 |
| 신한카드 | 088 |
| 아주캐피탈 | 089 |
| 에큐온저축은행 | 090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---|-----|
| 애큐온캐피탈 | 091 |
| 에이스손해보험 | 092 |
|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| 093 |
| 엔지니어링공제조합 | 094 |
| 예금보험공사 | 095 |
|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| 096 |
| 이크레더블 | 097 |
|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| 098 |
| 저축은행중앙회 | 099 |
|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| 100 |
| 전국렌터카공제조합 | 101 |
| 전국보험설계사 | 102 |
| 전국사무연대 | 103 |
| 전국새마을금고(해당분회*참고) | 104 |
|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| 105 |
| 전국택시공제조합 | 106 |
| 전국협동조합 | 107 |
|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| 108 |
| 처브라이프생명보험 | 109 |
| 케이프투자증권 | 110 |
| 코리아리저보험 | 111 |
| 코스콤 | 112 |
| 통조림가공수협 | 113 |
| 티머니 | 114 |
| 푸본현대생명보험 | 115 |
| 하나FNI | 116 |
| 하나금융투자 | 117 |
| 하나외환카드 | 118 |
| 하이투자증권 | 119 |
| 한국HP | 120 |
| 한국HSBC | 121 |
| 한국SGS그룹 | 122 |
| 한국거래소 | 123 |
| 한국공인중개사협회 | 124 |
| 한국교직원공제회 | 125 |
| 한국금융투자협회 | 126 |
| 한국기업평가 | 127 |
|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| 128 |
| 한국렌탈 | 129 |
| 한국마이크로소프트 | 130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--|-----|
| 한국바스프사무 | 131 |
| 한국시티은행 | 132 |
| 한국신용정보 | 133 |
| 한국신용카드결제 | 134 |
| 한국신용평가 | 135 |
| 한국신용평가정보 | 136 |
| 한국씨티은행 | 137 |
| 한국약학교육협의회 | 138 |
| 한국예탁결제원 | 139 |
| 한국오라클 | 140 |
| 한국은행 | 141 |
| 한국음악저작권협회 | 142 |
| 한국자산평가 | 143 |
| 한국정보산업연합회 | 144 |
|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| 145 |
| 한국증권금융 | 146 |
| 한국투자증권 | 147 |
| 한국해양진흥공사 | 148 |
| 한국화재보험협회 | 149 |
| 한화생명보험 | 150 |
| 한화손해보험 | 151 |
| 한화손해사정 | 152 |
| 현대상선 | 153 |
| 현대차증권 | 154 |
| 현대카드 | 155 |
| 현대캐피탈 | 156 |
| 현대커머셜 | 157 |
| 현대해상화재보험 | 158 |
| 협동조합 강원본부 | 159 |
| 협동조합 경인본부 | 160 |
|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| 161 |
|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| 162 |
|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| 163 |
| 협동조합 서울본부 | 164 |
| 협동조합 제주본부 | 165 |
| 협동조합 충북본부 | 166 |
| 협동조합 호남본부 | 167 |
| 흥국생명보험 | 168 |
| 흥국저축은행 | 169 |
| 흥국화재해상보험 | 170 |

| 기관명 | | 코드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광주 전남 | 무안농협 | 171 |
| | 운남농협 | 172 |
| | 청계농협 | 173 |
| | 일로농협 | 174 |
| | 함평농협 | 175 |
| | 천지농협 | 176 |
| | 선진농협 | 177 |
| | 진도농협 | 178 |
| | 서진도농협 | 179 |
| | 황산농협 | 180 |
| | 화원농협 | 181 |
| | 산이농협 | 182 |
| | 옥천농협 | 183 |
| | 여수농협 | 184 |
| | 여수원예농협 | 185 |
| | 광주원예농협 | 186 |
| | 나주배원예농협 | 187 |
| | 신안농협 | 188 |
| | 광양농협 | 189 |
| | 광양원예농협 | 190 |
| 대전 충남 | 서부농협 | 191 |
| | 서대전농협 | 192 |
| | 대전원예농협 | 193 |
| | 남대전농협 | 194 |
| | 충절로신협 | 195 |
| | 둔산신협 | 196 |
| 부산 울산 경남 | 금정농협 | 197 |
| | 기장농협 | 198 |
| | 남부산농협 | 199 |
| | 대형기선저인망수협 | 200 |
| | 동래농협 | 201 |
| | 해운대수협 | 202 |
| | 거제수협 | 203 |
| | 장승포농협 | 204 |
| 전북 | 전주농협 | 205 |
| | 삼례농협 | 206 |

| 기관명 | | 코드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
| 부산 울산 경남 | 고성농협 | 207 | |
| | 남해농협 | 208 | |
| | 동남해농협 | 209 | |
| | 상동농협 | 210 | |
| | 삼천포농협 | 211 | |
| | 양산기장축협 | 212 | |
| | 웅천농협 | 213 | |
| | 남지농협 | 214 | |
| | 영산농협 | 215 | |
| | 창녕농협 | 216 | |
| | 금남농협 | 217 | |
| | 금오농협 | 218 | |
| | 악양농협 | 219 | |
| | 하동농협 | 220 | |
| | 안의농협 | 221 | |
| | 함양농협 | 222 | |
| | 합천동부농협 | 223 | |
| | 합천농협 | 224 | |
| | 합천새남부농협 | 225 | |
| | 충북 | 보은농협 | 226 |
| | | 남보은농협 | 227 |
| | | 옥천농협 | 228 |
| | | 청산농협 | 229 |
| | | 대청농협 | 230 |
| | | 이원농협 | 231 |
| 미원농성농협 | | 232 | |
| 옥산농협 | | 233 | |
| 진천농협 | | 234 | |
| 이월농협 | | 235 | |
| 괴산농협 | | 236 | |
| 청천농협 | | 237 | |
| 군자농협 | | 238 | |
| 금왕농협 | | 239 | |
| KTGO | | 240 | |

***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점**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|-----|
| 서울 | 공덕 | 241 | 부산 | 사직1동 | 257 |
| | 서울동부 | 242 | | 구서2동 | 258 |
| 인천 | 서인천 | 243 | | 금정 | 259 |
| 대구 | 남부 | 244 | | 재송동 | 260 |
| | 성북 | 245 | | 주례 | 261 |
| 경기 | 송내 | 246 | | 연산제일 | 262 |
| | 성지 성남중부주례 | 247 | | 연제중앙 | 263 |
| | 성남중부 | 248 | | 연산6동 | 264 |
| | 주례 | 249 | | 부전1동 | 265 |
| 세종충남 | 합동 | 250 | | 거제4동 | 266 |
| 전북 | 중부 | 251 | | 연산로터리 | 267 |
| 부산 | 반여2.3동 | 252 | | 가야1동 | 268 |
| | 해운대중앙 | 253 | | 부산대병원 | 269 |
| | 남부중앙 | 254 | | 연산3동 | 270 |
| | 대연중앙 | 255 | | 연지 | 271 |
| | 사직3동 | 256 | | 태종대 | 272 |

참고 2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

|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종사자 인적 사항 | ① 성 명 | 이 푸 른 | | ② 주민번호(앞 7자리) | 111111-1***** | |
| | ③ 연 락 처 | 010-0000-0000 | | ④ 신청자와 관계 | 부 | |
| | ⑤ 이 메 일 | SSS@RRR.go.kr | | | | |
| | ⑥ 주 소 |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| | | | |
| | ⑦ 원사업장명 | 등대은행 (원사업자 사업장 작성) | ⑧ 소 속 업 체 명 | ABC 개발 | | |
| | ⑨ 근무처 코드 | 225(예시) | ⑩ 근무지 연락처 | 02-000-0000 | | |
| | ⑪ 근무기간 (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) | 2010.01.01. ~ 2021.01.22. ※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| | | | |
| | ⑫ 고용 형태 | 기간제 | 시간제 | 파견근로 | 간접고용 | 기타 |
| | 0 | | | | | |
| 장학금 신청자 인적 사항 | 성 명 | 김 초 록 | | 주민번호(앞 7자리) | 222222-2***** | |
| | 연 락 처 | 010-0000-0000 | | 종사자와 관계 | 자녀 | |
| | 주 소 |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| | | | |
| | 학 교 명 | 대한대학교 | 전 공 | 경영학과 | | |
| | 학 번 | 2018XXX | 이 메 일 | SSS@RRR.go.kr | | |
| <p>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(제2금융권)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,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학금 신청자명 : 김 초 록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</p> | | | | | | |
| <p>< 작성 시 참고 사항 ></p> <p>⑦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(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)</p> <p>⑧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⑦,⑧번 동일하게 기재,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각 기재</p> <p>⑨ 공고문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숫자로 기입(코드 미기재, 또는 오기재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)</p> <p>⑩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(2021.01.22.)까지 기재 (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,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)</p> <p>⑫ 종사자와 원사업장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(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,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) ※ 간접고용 : 원사업장과 원·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</p> | | | | | | |

7. 유지웅 기부장학금

1. 사업 목적

-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백만 원(200만 원 × 5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
- 신청자격: 체육계열 전공*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 - *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(예시: 태권도학과)
 - ※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(재단 확인)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5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 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8. 전력거래소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주·전라지역 저소득층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50백만 원(200만 원 × 25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
 - 광주·전남·전북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며,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* 가정**의 대학생
 - 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이어야 하며,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(참고1)
 - ** 미혼일 경우 부모,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, 「중소기업(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」 상 대표자가 부모,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25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전기·전력 전공자* > 연소자
 - * 신청자 학과명에 '전력' 또는 '전기' 단어가 포함된 자

□ 제출서류: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¹⁾, 사업자등록증명, 가족관계증명서²⁾, 기부장학금 신청서³⁾

- 1) 「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」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(<http://sminfo.mss.go.kr>)(신규발급의 경우,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)
- 2)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
- 3)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, 심사 탈락될 수 있음

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,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(단, 「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」의 경우, '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「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」 상 유효기간이 포함되면 인정)

□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 1

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107 중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16, 46417 중 | 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희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희주점업 |
| 58122 중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| 58211, 58212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|---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
| 91241 중 | 복권 판매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정부의 장애인자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준함

참고 3

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

- 사업장 소재지: 주소 기재
- 업 종: 주업종 기재 (**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**)
- 피해사항: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재

※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, 심사 탈락될 수 있음

| 주요 피해 사실 확인 내용 (예시) |
|---|
| <p>(기술 내용) <u>매출액 감소, 방문 고객수(거래 고객수) 감소,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,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(종업원) 수 감원,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, 부득이한 휴점(학원, 교습소 등), 중국 등 수출입 거래 차질 등</u></p> <p>작성 예시 현재 부모님께서 광주에서 00을 운영하고 있음.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(예를 들면 '19년 1~12월) 대비 금년 동기간('20년 1~12월)의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, 현재 00일간 휴업중임. 또한... (이하 생략)</p> <p>※ 예시 사례외,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 기술</p> <p>※ 별도 글자수 제한은 없으나, 신청서의 1/2페이지 분량 작성 권장</p> |

- 향후 학업계획: (간략히 기재)

※ 본 장학금 신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작성함.

1.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,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,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본인은 **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소상공인 가정**의 대학생이며, 푸른등대 전력거래소 기부장학금 **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님**을 확인합니다.

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년 ____월 ____일

신청자 : _____ (서명)
※ 본인 서명 후,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

9. 한국전력공사

1. 사업 목적

- 전기공학·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8백만 원(200만 원 × 27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(단, 국내 4년제의 4학년 이상은 제외)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실 기준 현재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
 - 학과명 포함 단어: 전기, 에너지
 - ※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
 - ※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27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
 - (1차)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, 2배수 선발
 - (2차) 생활환경(50점)* + 경진대회 입상경력(10점)**
 - * 생활환경: 장애인, 탈북가정(새터민), 가정외보호출신, 학생가장,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(각 항목 당 10점 부여)
 - ** 상장 및 관련서류: 전기·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(최우수상·금상(대상) 10점, 우수상·은상 5점, 기타 입상 3점) (기부처 최종 확인)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사회배려층 대상자(생활환경) > 경진대회 입상경력

- 제출서류: 사회배려계층(생활환경)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
 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
 - 탈북 가정(새터민)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 - 가정외보호출신: 입소확인서(또는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)
 - 학생가장*: 가족관계증명서
 - *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(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), 기혼자 제외
 - 다문화 가정*
 - *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
 - 한국 국적 취득 전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
 -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 - 상장 및 관련 서류: 전기·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0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1. 사업 목적

-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00만 원 × 5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실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
- 신청자격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주택 거주*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
- *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: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제출
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:
 - 1) (미혼자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: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- 2) (기혼자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: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※ LH 임대주택여부(계약자명, 계약자 주민등록번호, 계약자 핸드폰번호,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임대주택 해당여부 등) 기부처 최종 확인
- ※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, 계약자인 부 또는 모 (기혼자인 경우, 배우자)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※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, 계약자인 부 또는 모 (기혼자인 경우, 배우자)가 LH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중이어야 함

- 성적기준 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인원: 50명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 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
제출서류: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*

*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

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1. 한국투자공사

1. 사업 목적

-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30백만 원(250만 원 × 6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- 신청자격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,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 *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제출
-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*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(신입생 선발)
 -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6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70점) + 자기소개서*(30점) + 가산점**(5점)
 - * 심사위원: 기부처 1인, 한국장학재단 추천 1인 심사(내부 또는 외부)
 - ** 장애인 또는 미혼모·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
 -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(필수제출서류, 택1)
 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: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
 - 가정위탁: 가정위탁보호확인서
 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(선택제출서류)
 - 미혼모·미혼부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선택제출서류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

자기소개서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| |

12. 홈앤스마일

1. 사업 목적

- 방송계열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80백만 원(200만 원 × 4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, 방송계열 전공자*
 - * 신청자 학과명에 ‘방송’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4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‘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다자녀 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3. KDB나눔재단

1. 사업 목적

- 취업 준비생·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50만 원 × 20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*** 재학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* 편입생 제외,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,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
- 신청자격: **선발 분야별(일반분야, 특기분야)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* 참가가 가능한 자**

* 자기계발, 진로설정 등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지원('21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(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로 변경될 수 있음))

| 선발 분야 | 일반 분야(15명) | 특기 분야(5명)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선발 자격 (공통) | ○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* 대학생 * 장애인, 새터민, 가정외보호출신, 한부모 가정, 학생가장, 다문화 가정 | |
| 전공 분야 | ○ 전공 제한 없음 | ○ 예체능 계열 전공자* * 음악, 체육, 미술,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('21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) |
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**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내용: 학기당 **250만 원**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인원: **20명(일반분야: 15명, 특기분야: 5명)**

| 구분 | 1차 선발 인원 | 2차 최종 선발 인원*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일반 분야 | 45명(3배수) | 15명 |
| 특기 분야 | 15명(3배수) | 5명 |
| 합계 | 60명 | 20명 |

* 총 20명 중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1년 1학기 ~ '21년 2학기)
- 평가기준(분야별 선발)
 - (1차)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, 3배수 선발
 - (2차) 자기소개서(100점)
 - ※ 심사위원(2인): 기부처 1인 +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(내부 또는 외부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(택1)*
 - *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
 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
 - 탈북 가정(새터민)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 - 가정외보호출신: 입소확인서(또는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 위탁보호확인서)
 - 한부모 가정*: 한부모가족 증명서
 - *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, (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) 기혼자 제외
 - 학생가장*: 가족관계증명서
 - *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(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), 기혼자 제외
 - 다문화 가정*
 - *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
 -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
 -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

자기소개서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| |

14. KT&G장학재단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200백만 원(200만 원 × 10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실직자* 가정**의 대학생
 - * (상시근로자) 2020년 8월 19일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일자) 이후 실직한 자, 신청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유지(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, 실직상태로 간주)
 - (일용근로자) 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」 상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이고,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('20년 6월~'20년 8월 대비) 12일 이상 감소하여야 함
 - ** 제출서류 상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,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10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 기준: 다자녀 가정 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
□ 제출서류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**,
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자용)***, 가족관계증명서

* 국민건강보험공단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(전체 이력 제출 필수)

**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가능(전체 이력 제출 필수)

*** '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, 필수 제출(전체 이력 제출 필수)

□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5. KOSAF기부펀드(유형 II)

1. 사업 목적

-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

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(사업 종료 후 잔액포함)의 기부금으로 조성됨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 : 30백만 원(150만 원 × 2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 : 소속대학 인근* 주거시설**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 - *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·군일 경우 지원
 - ** 기숙사, 전(월)세 원룸, 하숙집, 고시원 등(단,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)
 - ※ KOSAF기부펀드II유형 기 수혜자 제외(재단 확인)
- 성적기준 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 : 20명
- 지원내용 : 학기당 1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 : 1개 학기('21년 1학기)
- 평가기준 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, 평가 점수 높은 순
 - 동점자 처리기준 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,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
 - ※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,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(20명)의 1.5배 내외로 4월 중 별도 요청 예정

□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(상세)

○ 전(월세) 주거 유형: 임대차계약서*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
※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
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

○ 기숙사,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 유형: 입실확인서** 1부 + 기숙사,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
*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

*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

□ 심사 사항

-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(시·군 기준)해야 함
-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*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)

*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,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

□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

참고 1

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

○ 신청자 인적사항

- 이 름 : 홍길동
- 소속대학 : 기부장학대학교
- 학 과 : 장학학과

○ '21-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정사항 포함)

1. 임차유형(택 1)

- 월세(기숙사, 고시원, 주택 등) 전세 기타 ()

2. 월 주거(예상) 비용(택 1)

-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~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
 ※ 학기/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

3. 임대차계약서(입실확인서 등)의 임차인(택 1)

-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: 본인 부친 모친
-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: 본인 배우자

4. 기타사항

-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: 00시 00구 00로(예시: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)
- 임대차계약서 주소(예정포함): 00시 00구 00로(예시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)
-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(예정포함): 2021. 03. 01. ~ 2022. 02. 28.

※ 유의사항

-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.
- *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.5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,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(학자금 지원구간, 성적 등)에 따라 최종 선정
-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
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년 ____월 ____일

신청자 : _____ (서명)
 ※ 본인 서명 후,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

참고 2 **하숙집 · 고시원 확인서 (예시)**

하숙집 · 고시원 확인서

| 1. 하숙집 · 고시원 주인(임대인) 인적사항 | | | |
|--|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 | 주소 | 연락처 |
| | 590415 - 2(예시) | | |
| 2. 학생(임차인) 인적사항 | | | |
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 | 주소 | 연락처 |
| | 920319 - 1(예시) | | |
| 3. 하숙(입실) 현황 | | | |
| 하숙(입실)기간 | 년 월 일 ~ 현재 | | |
| 총 하숙비(입실료) | 월금 총 원 | 숙박비(입실료) | 월금 원 |
| | | 식 대 | 월금 원 |
| <p>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· 고시원에 하숙(입실)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확인자 (하숙집 · 고시원 주인) 주 소 : 성 명 : (인) 사업자등록번호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</p> | | | |
| 비고 |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, 임차계약서, 재산세납부영수증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| | |

* 목적에 맞게 양식(내용)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참고 3

기숙사 입주확인서 (예시)

(제20 - 호)

○○○○○기숙사
입 주 확 인 서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|--|
| 성 명 | | 학 교 명 | |
| 호 실 | 관 호 | 연 락 처 | |

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○○○○○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성명: (서명)

○○○○○기숙사 관장 (직인)

참고 4

사업자등록증 (예시)



사업자등록증

(법인사업자:본점)

등록번호 :

법인명 (단체명) :

대표자 :

개업연월일 :

사업장소재지 :

본점소재지 :

사업의종류 :

발급사유 :
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

2018년 08월 30일

직인

동대구세무서장



붙임1

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가수 흥진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서류 없음 | |
| 건설근로자공제회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발급방법 :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→적립일수 확인하기→나의정보조회→적립내역서 출력 • 가족관계증명서(미제출시 탈락처리) *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|
| 구찌코리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서류 없음 | |
| 대한LPG협회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택시: (부모)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• 개인택시: (부모) 사업자등록증명(민원24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택시기사경력(1년이상)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※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,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|
| 말남장학금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|
| 사무금융 우분투자단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(다운로드 양식으로 작성) • 가족관계증명서* (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사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|
| 유지웅 기부장학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서류 없음 |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전력거래소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*, 사업자등록증명, 가족관계증명서**, 기부장학금 신청서*** * 「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」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(http://sminfo.mss.go.kr)(신규신청의 경우,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) **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***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, 심사 탈락될 수 있음 ※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,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(단 「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(소상공인))」의 경우, '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「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(소상공인))」 상 유효기간이 포함되면 인정) |
| 한국전력공사 | 선택 | <p>사회배려계층(생활환경) 및 입상경력 확인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● 탈북 가정(새터민)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● 가정 외 보호시설출신: 입소확인서(또는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) ● 학생가장: 가족관계증명서 ● 다문화 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-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) ● 상장 및 관련서류: 전기, 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명 |
| 한국토지주택공사 (LH)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* * 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|
| 한국투자공사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(필수제출서류, 택 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: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 - 가정위탁: 가정위탁보호확인서 |
| | 선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(선택제출서류) ● 미혼모·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선택제출서류) |
| 홈앤스마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출서류 없음 |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KDB나눔재단 | 필수 | <p>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(택1) ※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● 탈북 가정(새터민)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● 가정외보호출산 입소확인서(또는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) ● 한부모 가정: 한부모가족 증명서 ● 학생가장: 가족관계증명서 ● 다문화 가정 <p>-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</p> <p>-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)</p> |
| KT&G장학재단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**,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자용)***, 가족관계증명서 <p>* 국민건강보험공단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(전체 이력 제출 필수)</p> <p>**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가능(전체 이력 제출 필수)</p> <p>*** '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, 필수 제출(전체 이력 제출 필수)</p>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KOSAF기부펀드 유형 II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,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(20명)의 1.5배 내외로 4월 중 별도 요청 예정 [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(상세)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(월)세 원룸형태 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대차계약서*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 ② 주민등록등본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- 기숙사,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실확인서**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신청자 본인에 한함 ② 기숙사,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※ 심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(시·군 기준)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*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) *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,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|

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(2021. 1. 22.)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
※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

붙임2

기부처별 자기소개서

자기소개서(말남장학금, 한국투자공사, KDB니눔재단)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| |

붙임

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안)

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(안)

2021. 1. 18.

인 재 육 성 장 학 부

I 사업 개요

1. 목적

-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
-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

2. 근거
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업) 및 제20조(기부금의 모집·접수)
- 「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」 제15조(기부금품 운영위원회)

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 1.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

3. 추진 일정

| 업무내용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| '21. 1. 20.(수) ~ |
|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| '21. 1. 22.(금) 09:00 ~ 2. 5.(금) 18:00 |
| 심사자료 준비 (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) | '21. 2. 8.(월) ~ 4. 1.(목) |
| 장학생 심사 | '21. 4. 2.(금) ~ 4. 30.(금) |
|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| '21. 5월 초 예정 |

※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,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

*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af.go.kr>)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

4. '21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

(단위: 명, 백만 원)

| 유형 | 기부처 | 선발대상 | 선발인원 | 심사기준 | | 장학금액 (학기당) | 지원기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1차 심사 | 2차 심사 (기부처 맞춤형) | | |
| 생활비 | 1. 가수 홍진영 |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| 20 | 성적(100점) | - | 2.5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2. 건설근로자공제회 |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| 543 | 가계소득(100점) | - | 1 | 1개 학기 ('21-1) |
| | 3. 구찌코리아 | 패션, 의류, 의상, 섬유 관련 전공 대학생 | 34 | 가계소득(50점)+ 성적(50점) | - | 1.5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4. 대한LPG협회 |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| 260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5. 말남장학금 | 취경여고 졸업생 | 10 | 가계소득(50점)+ 자기소개서(5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6. 사무금융우분투재단 |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 | 50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7. 유익봉사장학금 |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| 5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8. 전력거래소 新 | 코로나-19 피해 소상공인 가정 중 광주 전라지역 소재 대학생 | 25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9. 한국전력공사 | 전기, 에너지 전공자 | 27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생활환경(50점)+ 입상경력(10점) | 2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10. 한국토지주택공사 新 (LH) |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| 50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11. 한국투자공사 |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산업생 | 6 | 가계소득(70점)+ 자기소개서(30점)+ 가산점(5점) | - | 2.5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12. 휴먼스미일 新 | 방송 관련 전공 대학생 | 40 | 가계소득(50점)+ 성적(5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13. KDB나눔재단 |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※ 단 특기분야는 예체능 전공자 | 20 | 가계소득(50점)+ 성적(50점) | 자기소개서(100점) | 2.5 | 2개 학기 ('21-1~'21-2) |
| | 14. KT&G장학재단 新 | 코로나-19 피해 실직 가정 대학생 | 100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2 | 1개 학기 ('21-1) |
| | 15. KOSAF기부펀드 유형II |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| 20 | 가계소득(60점)+ 성적(40점) | - | 1.5 | 1개 학기 ('21-1) |
| 합 계 | | | 1,210 | - | - | - | - |

II 공통 선발 기준

1. 학생 신청

□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

- '21. 1. 22.(금) 09:00 ~ 2. 5.(금) 18:00까지
 - ※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온라인 신청

□ 서류제출

-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
 - (서류제출) 신청 완료 후 1일~2일(휴일 제외)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·선택서류 제출
 - (가구원동의)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
 - ※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
 - ※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만 인정,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 사용 불가
-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
 -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

2. 대학 추천

-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, 이수 학점, 성적,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(대학 관리자포털)
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0조의2(자료 제출의 요청)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0.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: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

- 대학 학사·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(심사 이전) 등록 완료
- ※ 학사정보,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

□ 정보 제공방식

-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[학사정보관리]와 [수납원장관리]에서 등록
-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

3. 대상자 선정

□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 산정 및 적용

-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 적용
-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을 심사 시 적용
- ※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
- ※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은 반영하지 않음

□ 장학생 심사

-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,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(자기소개서 등)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- 성적이 Pass/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/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
-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(신규,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)

| 구 분 | | 평가항목 |
|-----|-----|---|
| 1차 | 1단계 | ○ 적격여부 확인: 선발자격조건* 및 서류 확인 |
| | 2단계 | ○ 가계소득 평가: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 확인 ○ 성적 평가: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- 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× 100 |
| 2차 | | ○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|

* 선발자격조건: 기부처별 신청자격, 성적, 소득수준, 이수학점, 학적상태 등 심사

4. 중복지원 방지

기본 취지

-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(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)

※ 등록금 범위: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 + 선택경비

중복지원여부 확인

-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

※ 단,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

5. 장학금 지급

장학금 유형

- 생활비 무상보조, 정액 지원

장학금 지급 방식

-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,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6. 사후 관리

장학금 환수

-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금액 환수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□ 제2조(정의)

4. '공공재정'이란 공공기관이 조성, 취득하거나 관리, 처분,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.

□ 제8조(부정이익등의 환수)

-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(이하 "부정이익등"이라 한다)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□ 장학금 반환

○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, 자퇴, 제적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,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,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

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

※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

○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 등)에 미충족될 경우

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

※ 단,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○ 반환대상 금액

-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

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

| 반환사유 발생일* | 반환기준 | 반환 금액 산정(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|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| 1,666,666원 ※ 2,000,000원 × 5/6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| 1,333,333원 ※ 2,000,000원 × 2/3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| 1,000,000원 ※ 2,000,000원 × 1/2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 반환금 없음 |

- *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
- ※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 가능('21-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)

□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(대학 공문 제출 필수)

-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,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,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

□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(대학 공문 제출 필수)

-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, 본인의 중대한 질병, 사망, 사고, 지진·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

※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·반환 예외처리 신청서(사유 등 기재)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
※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. 만일,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.

7. 자기소개서 심사

□ 심사위원 위촉
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
-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
- 사업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

□ 기능

-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

-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,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으로 대체
- 임기
 -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
- 수당
 -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 - ※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

8. 기타 공통사항

- 선발기준 우선순위
 -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, 기부처별 선발계획을 우선함
- 발생이자 처리
 -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

- 참고 1.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
2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
 3. 소득확인 제출서류
 4. 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

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

□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60 | 54 | 48 | 42 | 36 | 30 | 24 | 18 | 12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비 점율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 점수 | 40 | 38 | 36 | 34 | 32 | 30 | 28 | 26 | 24 | 22 |
| 성비 점율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20 | 18 | 16 | 14 | 12 | 10 | 8 | 6 | 4 | 2 |

□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50 | 45 | 40 | 35 | 30 | 25 | 20 | 15 | 10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비 점율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 점수 | 50 | 47.5 | 45 | 42.5 | 40 | 37.5 | 35 | 32.5 | 30 | 27.5 |
| 성비 점율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25 | 22.5 | 20 | 17.5 | 15 | 12.5 | 10 | 7.5 | 5 | 2.5 |

□ 가계소득(30점) + 성적(7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30 | 27 | 24 | 21 | 18 | 15 | 12 | 9 | 6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비 점율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 점수 | 70 | 66.5 | 63 | 59.5 | 56 | 52.5 | 49 | 45.5 | 42 | 38.5 |
| 성비 점율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35 | 31.5 | 28 | 24.5 | 21 | 17.5 | 14 | 10.5 | 7 | 3.5 |

□ 가계소득(70점) + 성적(3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70 | 63 | 56 | 49 | 42 | 35 | 28 | 21 | 14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비 점율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 점수 | 30 | 28.5 | 27 | 25.5 | 24 | 22.5 | 21 | 19.5 | 18 | 16.5 |
| 성비 점율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15 | 13.5 | 12 | 10.5 | 9 | 7.5 | 6 | 4.5 | 3 | 1.5 |

□ 가계소득(10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100 | 90 | 80 | 70 | 60 | 50 | 40 | 30 | 20 |

□ 성적(100점)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비 점율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 점수 | 100 | 95 | 90 | 85 | 80 | 75 | 70 | 65 | 60 | 55 |
| 성비 점율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50 | 45 | 40 | 35 | 30 | 25 | 20 | 15 | 10 | 5 |

참고 2

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

| 구 분 | 종 류 |
|--------------|---|
| 학자금 대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,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■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|
| 장학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대학원생지원장학금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(2012년 사업폐지), 전문기술인재장학금(2019년 사업신설)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)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■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 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○○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|
| 중복지원 예외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가 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,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|

* '21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(단,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)

참고 3

소득확인 제출서류[필수/선택/다자녀]

① 필수서류(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)
 -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(재외국민/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·서류징구 기준·서류처리대상·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)는 별도지침 참조
 * 20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

| 구분 | 부 | 모 | 제출서류 | 추가서류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미혼 | 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^{주1)} | | |
| | 생존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 |
| | 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
| | 생존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폐쇄인정 ^{주5)}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+ 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^{주9)}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 |
| | 사망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폐쇄인정 ^{주5)} |
| | 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| |
| | 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폐쇄인정 ^{주5)} |
| | 사망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폐쇄인정 ^{주5)}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^{주9)}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폐쇄인정 ^{주5)}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
| 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 |
| 실종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+ 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 |
| 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폐쇄인정 ^{주5)} | |
| 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 |
| 실종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 |
| 기혼 | 배우자 생존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^{주1)} | | |
| |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| |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배우자 사망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^{주6)} | | |
| | 배우자 실종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^{주2)} | | |
| | 배우자가 재외국민·외국인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3)} | |

※ 서류 확인 시, '학자금 신청일'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 ※ 신청 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(필수서류)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 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'상세'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(gov.go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발급 가능
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
 ※ '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체적등본 제출 필요
 주1) 배우자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
 주2) 실종 증빙 서류: 가족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 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 재외국민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여권사본,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경 포함))
 주4) 주민등록표등본: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'가구원과 동일세대' 여부 확인필요
 주5) 폐쇄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'폐쇄'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
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접수·확인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
 주7) 주민등록표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 주9)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'일반' 서류로 학생 확인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

② 선택서류

◇ 복지자격서류 (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)

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】

- 인정 범위 :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·재산 조사 전,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

*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

| 구분 | 자격명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^{주1)} |
| | 기초의료급여수급자 | |
| 차상위계층 ^{주2)} | 기초주거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|
| |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|
| 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| |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
| |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
| | 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
|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
| 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|

※ 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제외) 후 홈페이지 확인 시, ‘(선택서류)완료’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 생략

- 단, 가구원의 복지자격(기초 및 차상위)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

※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

※ [신청정보]에 “기초생활수급자”, “차상위계층”, “장애인”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

주1)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

주2) 아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

◇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| 증명서 | | 명의 | 발급기관 | 비고 |
|-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|
| 1 | 장애인연금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 본인 또는 가구원* 명의 *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, 기혼일 경우 배우자 | 주민자치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· 장애인연금수급자는 ‘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’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|
| 2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 주민자치센터 | ·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|
| 3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 주민자치센터 | · 만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) |
| 4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 국민건강 보험공단 | ·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, 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(부양 요건)을 모두 갖춘자 |
| 5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| 주민자치센터 | |
| 6 | 수급자 증명서 | | 주민자치센터 | 주거급여 수급자, 교육급여 수급자 |

◇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

| 구분 | | 내용 | |
|--------|--|---|---|
| 기본처리기준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기본서류)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형제·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| |
| 세부처리기준 |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'신청학생과 형제·자매' 함께 확인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처리 | |
| |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'신청학생과 형제·자매' 함께 확인 불가 | 재혼가정 유지 | -부·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·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* 인정 * 단,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·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|
| | | 재혼가정 해체 | -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(이혼후비거주-생존 등) 원칙적으로 부·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→ 단, 학생이 이복(동복)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,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·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* 인정 가능 * 1)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, 2) 자녀 합산을 위한 부·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, 3)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모두 제출 |

- ※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본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
- ※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
- ※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('07.12.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)
- ※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
- ※ 기혼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

참고 4 **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** *(※대학공문 제출 필수)*

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

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|--|
| 인적사항 | 성 명 | | 대학명 | |
| | 전화번호 | | 학과 | |
| | 휴 대 폰 | | E-mail | |
| | 주 소 | | |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|
| 장학금 수혜현황 | 장학금 수혜학기 | 년도 학기 | 환수대상금액 | 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| <p><i>(상세히 기술할 것)</i></p>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신청자 확인 사항 | <p>1. 증빙 서류 제출 :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.</p> <p>2.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. 만일,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.</p> |
|--------------|--|